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6.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시의 근로자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으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복지 실현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재산현황

- 건물명 :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 위치 : 구미시 구포동 1023번지
- 규모 : 부지 15,503.5㎡, 연면적 5,995.44㎡(지하 2층, 지상 3층)
- 건립비 : 180억원(국비76, 도비15, 시비89)
- 주요시설 : 수영장(1), 헬스장(1), 에어로빅장(1), 대강당(1), 시청각실(1), 도서실(1), 야외무대(1), 취미교육실(4), 컴퓨터실(1), 어학실(1) 등

3. 운영보조금 : 연1,57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 관리비	기타 (이윤 및 부가세)	비고
1,575.6	805.7	233.3	461.6	75	

4. 관련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m²)	필 지	면적(m²)	
합계			1	5,995.44	1	15,503.5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1	5,995.44	1	15,503.5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 반 재 산	행정재산외 모든 공유재산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구미시 구포동 1023번지

○ 부지면적 : 15,503.5 m²

○ 소유자 : 구미시장

○ 용도지역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 시설규모

• 건축면적 : 2,835.42m² • 건축연면적 : 5,995.44m²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지하2층, 지상3층)

• 주차시설 : 143면

○ 시설내용

(건축물)

층 별	면적(m ²)	주 요 시 설	시 설 개 요(m ²)
계	5,995.44		
지하2층	304.75	기 계 실	수처리실 및 공조실 홀, 계단 등
지하1층	2,591.61	체육시설(3)	수영장/샤워장(탈의실 포함) 헬스장/에어로빅장/샤워장(탈의실 포함)
		관 리 실	당직실, 안내사무실, 매표소, 강사실 전기실, 기계실
		기 타	샤, 홀, 화장실
지상1층	1,461.88	사 무 실	관리사무실, 문서고, 수표소
		휴 게 실	커뮤니티공간
		기본시설(2)	강당, 야외무대
		체육시설(1)	농구장/배드민턴&족구장
		기 타	홀, 화장실 등
지상2층	784.39	도 서 실(1)	도서실
		강 의 실(3)	컴퓨터실, 어학실, 소모임방
		기 타	상담실, 홀, 화장실 등
지상3층	852.81	강 의 실(2)	시청각실, 취미교육실(준비실 포함)
		기 타	홀, 화장실 등
지상4층		기 타	태양광발전설비, 휴식공간

(설비 및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물 내 역		비 고
기계설비	위생설비(양변기27, 장애인양변기4, 소변기10, 장애인소변기4, 세면기22, 입식샤워기76, 좌식샤워기2, 청소용수채4), 외기공조기(1), 스크림보일러(3), 응축수펌프(1), 밀폐식팽창탱크(1), 열교환기(1), 증기헛다(1), 천정용전기온풍기(8), 급배기팬(31), 물탱크(1), 부스터펌프(1), 실내환기장치UNIT(5), 배수펌프(3), GHP실내기(71), GHP실외기(13), 도시가스(1), 무대설비(2)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기(1), 전력시스템, 경관조명설비, 수영장조명설비, 실내조명설비, 옥외보안등설비, 태양광발전설비(2)		
통신설비	CCTV(9), 구내통신선로, 구내유선방송설비		
소방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방송설비	대강당	음향장비(1), 영상장비(1),	
	시청각실	음향장비(1), 영상장비(1),	
	에어로빅실	음향장비(1)	
	헬스장	음향장비(1)	
	수영장	음향장비(1),	
부대시설	조 경	소나무 외 31종(교목592주, 관목12,812주, 기타7,130본, 잔디2,290㎡), 파고라(2), 평의자(8), 바닥분수설비(1), 배드민턴장(2), 배드민턴포스트(2), 농구장(1), 농구대(2)	
	주차장	143면(장애인9, 임산부1, 버스3, 경차3 포함)	
	국 기 계양대	1식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관 련 법 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운영) 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을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향상과 근로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센터 및 회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 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